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의 존속기한이 당초 '13.03.11 ~ '16.02.29까지 3년이었으나, 존속기한 만료일이 '17.08.31까지로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조례 제2028호(2013.03.11.) 성주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일 연장

- 당 초 : '16.02.29까지
- 변 경 : '17.08.31까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3) 입법예고 : 2015. 12. 28. ~ 2016. 1. 4 (의견없음)

4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 한시기구인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('13.03.11 ~ '16.02.29)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주1, 2 일반산업단지 업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연장 승인(2015.11.30.)을 받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(제2028호)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산업단지 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당초 "2016년 2월 29일"에서 "2017년 8월 31일"로 1년 6개월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